

위험물 포장·용기검사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30일
신 청 인	상호(명칭)		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	
검사소 소재지			
부 지 면 적			
검 사 장 비			

「항공안전법」 제7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·용기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위험물 포장·용기의 검사를 위한 시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(설비 및 기기 일람표와 그 배치도를 포함합니다) 2. 사업계획서 3. 시설·기술인력의 관리 및 검사시행절차 등 검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검사업무 규정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----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